

# 조례안 검토 보고서

-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2
- 거창군 자진파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 13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정옥]

#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9. 11.

## 2. 제안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 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나.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확충,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교육 등의 내용을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홍보 등의 내용을 정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41조

나. 예산조치 : 47백만원(2012년도 예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12. 8. 09. ~ 8. 29.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전수조사, 위험 구역 설정·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과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2조, 제23조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확보 사항과 대국민 홍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6.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6. 8>

#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9. 11.

## 2. 제정이유

-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나.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라.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마.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바. 단원 등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사. 경비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12. 7. 27. ~ 8. 16.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이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위험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9. 11.

## 2. 제안이유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와 관련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조항이 삭제(2009.04.01)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6조)
- 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8조,  
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2012. 06. 13. ~ 7. 03.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 이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와 관련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조항이 삭제(2009.04.01)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 삭제

###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 2011.9.10] [법률 제10455호, 2011.3.9,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8조 삭제 <2009.4.1> ※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폐지

### □ 「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2.5.23] [법률 제11094호, 2011.11.22, 일부개정]

**제15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9. 11.

## 2. 제안이유

-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 제2조)
- 나.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 제6조)
- 다.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일시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제8조)
- 라. 유용미생물 공급제한 및 공급장려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 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제9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300백만원(2013도 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2. 7. 26. ~ 8. 15.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이 조례안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이바지하고자 거창군 유용미생물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에서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일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에서는 유용미생물 공급제한 및 공급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시대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농법에 의한 농·축산물의 생산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거창군 유용미생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3호, 2011.7.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

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9.4.1]

#### □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9. 11.

## 2. 제안이유

- 2004. 01. 07. 이후 상수도 요금의 동결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을 조정하여 군에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안 별표 2, 3, 4)
  - (1) 급수 업종별 요율표(별표 2)
    - 상수도 요금 인상율 : 12.6%(가정용 1단계 : 494원/m<sup>3</sup> ⇒ 544원/m<sup>3</sup>)
    - 급수 업종 축소 : 4종 ⇒ 3종
  - (2) 업종 구분표(별표 3)
    - 업종 축소에 따른 별표 조정(대중탕용을 일반용으로 편입)

(3)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별표 4)

-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 인상(13mm : 360원⇒750원 등)

나.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8조, 제46조)

(1)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안 제8조)

(2)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 ⇒ 「수도법」 제71조(안 제46조)

다.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라. 미비된 조문의 개정 및 신설(안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41조)

(1)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관련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2) 동파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대금 납부주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3) 급수표지 별지 서식 지정(안 제41조)

마. 옥내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안 제37조)

○ 감면기간 관련 단서조항 신설 : 최대 3개월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12.6.14. ~ 2012.7.04.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 이 조례안은

2004. 01. 07. 이후 상수도 요금 동결 등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을 조정하여 군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별표 2, 3, 4에서는 요금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8조, 제46조에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2조, 제5조, 제6조에서는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 안 제7조, 제11조, 제41조에서는 미비된 조문의 개정 및 신설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37조에서는 옥내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사항을 반영함.

○ 검토결과

상수도사용료 인상비교표 (제27조 관련)

업종별	가구수 (22,213)	사용범위 (m <sup>3</sup> )	현행 요금	개 정			타 시 군	
				요금	인상	비율(%)	창녕	김해
가 정 용	14,821 (66.7%)	1 ~ 20	494	544	50	10	630	550
	2,492 (11.2%)	21 ~ 30	642	737	95	15	810	790
	689 (3.1%)	31이상	839	963	124	15	1,060	1,210
일 반 용	2,300 (10.4%)	1 ~ 30	607	668	61	10	780	1,070
	1,020 (4.6%)	31 ~ 50	728	835	107	15	940	1,070
	614 (2.8%)	51 ~ 100	849	974	125	15	1,100	1,510
	208 (0.9%)	101 ~ 300	971	1,115	144	15	1,250	1,840
	36 (0.1%)	301이상	1,092	1,254	162	15	1,410	1,840
대중탕용	15 (0.1%)	1 ~ 200	638	일반용 업종적용			1,010	860
	1 (0%)	201 ~ 300	766				1,220	1,290
		301 ~ 500	893				1,420	1,350
		501이상	1,020				1,620	1,480
산 업 용	17 (0.1%)	1m <sup>3</sup> 당	568	652	84	15	-	-

- 평균적으로 12.6% 인상되었다고 하나 가정용 1~20톤과 일반용 1~30톤 사용자에게는 10%인상되었고 그 외에는 15%를 인상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이 높아 누진제가 적용되었음.
- 우리군의 경우 상수도 생산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최저로 나타나 있음. 그 원인으로 생산원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으로 경남도내에서 최고 높은 것이기 때문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상수도 업종별 평균단가 시군별 비교

구분	전체평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생산원가	현실화율	비고
전국평균	609.9	442.6	1,021.7	684.8	761.6	80.1	
도평균	737.4	541.8	1,128.5	1,027.1	962.4	76.6	
<b>거창</b>	<b>591.7</b>	<b>520.2</b>	<b>715.5</b>	<b>712.7</b>	<b>1,625.3</b>	<b>36.4</b>	
창원	708.2	534.6	1,172.0	1,158.3	880.1	80.5	
마산	696.7	552.9	977.4	1,035.5	725.0	96.1	
진주	428.6	297.0	574.0	585.9	499.9	85.7	
진해	789.0	586.6	1,222.2	1,097.5	1,081.4	73.0	
통영	1,089.0	720.7	1,825.3	1,587.8	1,203.9	90.5	
사천	841.0	647.6	-	1,207.9	1,236.0	68.0	
김해	837.6	580.2	1,445.0	1,300.8	914.8	91.6	
밀양	678.9	551.1	1,000.3	855.5	1,341.0	50.6	
거제	827.5	667.7	1,213.8	1,098.3	1,110.6	74.5	
양산	892.9	568.1	1,397.7	1,330.9	1,037.0	86.1	
의령	580.3	450.2	815.5	734.3	1,104.0	52.6	
함안	649.4	463.0	1,102.2	955.5	1,679.2	38.7	
창녕	882.9	701.7	1,116.4	1,287.6	1,948.7	45.3	
고성	909.0	610.9	1,327.4	1,080.8	1,035.0	87.8	
남해	900.2	735.0	1,246.6	1,005.0	1,109.0	81.2	
하동	800.3	669.1	1,129.9	1,036.3	1,398.0	57.2	
산청	662.8	483.5	921.7	612.6	1,517.0	43.7	
함양	632.9	462.8	893.9	1,060.6	1,562.2	40.5	
합천	644.3	514.8	1,162.2	1,016.4	989.5	65.1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수도법」

#### 제71조(원인자부담금)

-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 「수도법」 시행령

####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9. 11.

## 2. 제안이유

- 2004.01.07.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5.04%에 불과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환경부 「하수도조례 표준안」(‘10.9.30) 및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군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안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하수도 요금 인상율 : 12.6%(가정용 1단계:94원/㎥⇒104원/㎥)
    - 하수도 업종 축소 : 4종 ⇒ 3종

나.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리 개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7조 ~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4조제6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30조)

- (1) 중수도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 제11조)
-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안 제26조)
- (3)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안 제13조제1항)
- (4)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안 제24조제6항)
- (5)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의 규정(안 제28조제2항)
- (6) 「지방세법」의 예 ⇒ 지방세 징수의 예(안 제30조)

다. 하수도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함(안 제22조 단서, 별표 4, 별표 5)

- (1)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 신설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산정(안 제22조 단서, 별표 5)
-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예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안 별표 4)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 ~ 제1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2012. 6. 14. ~ 7. 04.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이 조례안은

2004.01.07.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5.04%에 불과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환경부 「하수도조례 표준안」(10.9.30) 및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군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별표 1**에서는 요금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에서는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리 개정 등 법령개정 따른 관련 내용 정비사항을 반영하며
- **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에서는 하수도급수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함

○ 검토결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비교표

업종별	가구수 (20,701)	사용범위 (m <sup>2</sup> )	현행 요금	개 정			타 시 군	
				요금	인상	비율(%)	창녕	사천
가 정 용	13,547 (65.4%)	1 ~ 20	94	104	10	11	108	206
	2,402 (11.6%)	21 ~ 30	125	143	18	14	165	243
	646 (3.1%)	31이상	167	192	25	15	231	338
일 반 용	2,202 (10.6%)	1 ~ 30	110	121	11	10	150	243
	1,011 (4.9%)	31 ~ 50	139	159	20	14	270	243
	614 (2.9%)	51 ~ 100	169	194	25	15	319	338
	212 (1.0%)	101 ~ 300	195	224	29	15	363	388
	36 (0.1%)	301이상	242	278	36	15	396	464
대중탕용	14 (0.1%)	1 ~ 200	120	일반용 업종적용			192	219
	1 (0%)	201 ~ 300	147					219
		301 ~ 500	172					219
		501이상	200					287
산 업 용	16 (0.1%)	1m <sup>2</sup> 당	109	125	16	15	165	219

- 평균적으로 12.6% 인상되었다고 하나 가정용 1~20톤 사용은 11%, 일반용 1~30톤 사용은 10%인상되었고 그 외에는 14~15%를 인상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이 높아 누진제가 적용되었음.
- 우리군의 경우 하수도 처리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경남도내 최저수준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원인으로 생산원가가 전국평균의 3배이상으로 경남도내에서 최고수준이기 때문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 요금 시군별 현실화율 비교

구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평균단가 (원/톤)	처리금액 (백만원)	처리원가 (원/톤)	현실화율(%)
전국	4,948,575	1,356,071	274.0	3,541,151	715.6	38.3
경상남도	283,188	65,241	230.4	229,067	808.9	28.5
거창군	3,915	490	125.2	8,827	2254.7	5.6
창원시	65,089	15,855	243.6	34,031	522.8	46.6
마산시	41,062	7,128	173.6	23,938	583.0	29.8
진주시	42,459	9,067	213.5	28,997	682.9	31.3
진해시	15,079	2,537	168.2	14,292	947.8	17.8
통영시	11,503	2,488	216.3	11,218	975.2	22.2
사천시	8,393	2,232	265.9	20,546	2448.0	10.9
김해시	41,690	13,389	321.2	37,884	908.7	35.3
밀양시	7,109	1,335	187.8	3,994	561.8	33.4
거제시	14,965	4,236	283.1	12,898	861.9	32.8
양산시	18,740	3,993	213.1	24,809	1323.9	16.1
의령군	822	121	146.7	496	603.4	24.3
함안군	1,424	214	150.5	630	442.4	34.0
창녕군	3,787	709	187.2	1,574	415.6	45.0
고성군	1,897	754	397.5	1,395	735.3	54.1
남해군	1,069	106	99.2	2,101	1965.4	5.0
하동군	662	114	172.6	390	589.6	29.3
산청군	538	41	76.2	124	230.5	33.1
함양군	1,656	250	151.0	470	283.8	53.2
합천군	1,329	182	136.9	453	340.9	40.2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건축법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 지방세기본법

###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만 해당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18조 및 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122조(보정요구)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써 이를 보정하거나, 도·시·군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도·시·군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23조(결정 등)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 제124조(결정의 경정)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